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4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국보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◆◆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< 금감원 원안 >

○ ㈜국보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2년
- 과태료 36백만원
- 시정요구

○ 前대표이사 ☆☆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★★★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◆◆회계법인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 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◎◎◎
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(코스닥, 코넥스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< 수정심의·의결 >

○ ㈜국보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2년
- 과태료 36백만원
- 시정요구

○ 前대표이사 ☆☆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★★★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◆◆회계법인
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◎◎◎
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국보 >

○ **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**

-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, 동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

○ **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**

-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○ **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**

-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('19년) 재무제표 사용함

< ◆◆회계법인 >

○ **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의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**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의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 등